

2020년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3.(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01건(안건번호 제2020-143770호~14436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3770호는 상업용 저작물의 각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377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 의견임.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튜브' 게시 '영상'에 대해 '구글'에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1호~7호)

- 회의결과: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여 기간 내 심의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다음 주 개최되는 2분과 심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6쪽에 카테고리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테고리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AT-X', '일본 NTV', '월트디즈니컴퍼니', '워너브러더스', '(주)한글과컴퓨터', '이십세기폭스', '영국 BBC three', '영국 sky one', '미국 CBS'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0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770호는 보호원에서 시범운영중인 공익신고제를 통해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공익신고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담아두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 관계를 맺은 사람에 한하여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 채증자료 상단에 '서로이웃'이라고 확인됨.
블로그 프로필에 "□□□□□ □□ □□□□□"라고 되어 있어 교

류가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로이웃'을 끊는 것으로 추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애니메이션 한 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용 및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3770호에 대해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A 위원, D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377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4377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 ○○○○ ○○○○○' 프로그램을 암

호화해서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품키 입력없이 자동으로 인증되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31,000원에 판매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377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제품키를 입력하는 것은 식별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권리보호 수단 중의 하나인데 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임.
정당한 관리자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불법복제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관리자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A 위원: 해당 업체에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관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품번호를 암호화하거나 제품키

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권리자들과 협의회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임.
- B 위원: 저작권법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음. 협의회를 만든다면 권리자단체와 이용자단체가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임.
시정권고를 하면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공문이 발송되고 권리자에게는 통지되지 않는데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권리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C 위원: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부대의견으로 한글프로그램의 제품번호 부여 및 관리방식을 보다 어렵게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권리자 측에 요청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37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3772호~14436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영화 '라라랜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bluRay 고화질 영상을 300포인트에 판매중임. 라라랜드는 2016.12.7. 개봉했고 2020.3.25. 재개봉하여 일부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000원에 구매하여 볼 수 있음.

(방송 '위 베어 베어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EBS에서 방송한 영상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340포인트에 판매중임.

(영화 '국제수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2020.9.29. 개봉한 국내 영화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60포인트에 판매중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4,900원에 구매하여 볼 수 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43772호~1443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D 위원,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3772호~14436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43772호~14436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동 규정 제38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다음 주 개최되는 2분과 심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10.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